

#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3

제출일자 : 1993. 9. 11

제출자 : 남구청장

## 1. 提案理由

동일 자치 단체내에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처분관리에 있어 대부분 산출기준, 납부기한등이 상이한 것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며, 부산직할시설계심사위원회조례가 부산직할시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코자 함

## 2. 主要骨子

- 공유재산의 대부분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납부하게 되어 있는것을 국유재산 대부분 납부기한인 60일과 동일하게 30일 연장 (안 제26조)
- 건물대부분 산출기준중 3층이상 건물의 건물평가액 산정기준 5개목을 7개목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25조 제3호)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안 제38조의 2)
- 청사 신축시 부산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안 제47조)

## 3. 關係法令

국유재산법시행령, 동시행규칙, 부산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

##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호중 "영제95조제1항" 을 "영제95조제2항" 으로 한다.

제25조제2호 나목 다음에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 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중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하고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제26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30일이내"를 각각 "60일이내"로 한다.

제38조의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 4. 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 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심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영 제10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잡증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등의 대상 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영 제9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95조 제 2항 ----- ----- ----- -----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생 략) 2. (생 략) 가. (생 략) 나. (생 략) (신 설) 3. (생 략) 가. (생 략)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마. 지하실(2층이하 건물의 지하실 포함)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마. 지하실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p>(신 설)</p> <p>(신 설)</p> <p><b>제26조(대부료의 납기) ①구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 년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b></p> <p>다만, 계약체결연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u>30일이내에</u>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2.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u>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u></p> <p><b>제38조의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생 략)</b></p> <p>1 - 2. (생 략)</p> <p>(신 설)</p>	<p>바.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p> <p>사. 지하 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u>각 5분의 1</u></p> <p><b>제26조(대부료의 납기) ①-----</b></p> <p>-----</p> <p>-----</p> <p>----- <u>60일이내</u> -----</p> <p>----- .</p> <p>-----</p> <p>1. (현행과 같음)</p> <p>2. ----- <u>60</u> <u>일이내</u> -----</p> <p>----- <u>60일이내</u> -----</p> <p><b>제38조의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b></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m<sup>2</sup>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m<sup>2</sup>이하로서</u></p> <p><u>1981. 4. 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 건축물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 (건물바닥</u></p>
--	--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  
면적도 포함)를 등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  
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일단의 면적  
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47조 (시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직할시  
설계심사위원회 운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 (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